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3차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4시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https://youtu.be/EdRc9Vo53a4>)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본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평등을 토론하라 • 3차 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차	4월 6일(화) 오후 2~4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2차	4월 13일(화) 오후 2~4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3차	4월 27일(화) 오후 2~4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발제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 발제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토론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4차	5월 11일(화) 오후 2~4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발제문 1.

‘가족화된 사회’를 넘어 가족상황차별 해소와 가족 구성의 권리1)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1. 들어가며- 개인의 권리로서 가족을 논의하기

개인의 권리로서 가족을 논의하는 것은 모든 개인을 가족 안으로 밀어 넣거나, 개인의 권리를 가족을 통해서만 전달받도록 하는 차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가족을 넘어서도 인간다운 생존과 삶이 가능할 때, 가족 관계에서도 친밀한 결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적인 의제로 제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은 가족유지가 아니라 친밀한 결속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인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로서 가족을 논의하는 것은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제도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가족을 차별과 연결된 제도로 문제화 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흐름은 호주제 운동으로부터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급격하게 부상된 가족의 변화가 호주제 폐지운동을 확산시킨 동력이었지만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확보하거나 제도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이성애 결혼·혈족 중심의 가족체계의 변화를 담지하지는 못했다. 호주제 폐지운동이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가족관계나 위계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넘어서 다양한 가족들의 삶을 존중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만²⁾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의 협소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적인 기초를 위한 포스트-호주제 사회의 기획이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호주제의 남성 장자 중심의 부의 분배 시스템이나 호적 중심의 집안 구성은 변했지만,³⁾ 호주제 폐지 이후에 혈연인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부성강제주의가 삭제된 이후에도 새로 신설된 현재 민법 제 781조에서도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시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결정하도록 하였다. 가족은 아버지의 핏줄,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이어야 하며, 가족은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이성애가 부장적 국가를 유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기획된 가족의 정상성을 넘어 성평등과 인권의 측면에서 가족을 ‘또 다시’ 기획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1) 본 발표는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2021년 3월 19일)”에서 발제한 “가족정책의 새 방향을 제안한다: 정상 인구, 정상 가정에서 가족구성권의 권리를 향해” 발제문의 일부의 내용에 기반한다.

2) 김영정(2018) 『여성가족정책사 현장 재조명: 호주제 폐지 운동을 중심으로 본 가족 이슈 변화와 방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면.

3) 나영정(2019).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서의 가족: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생활동반자법까지」, 『가족구성권연구소 창립 기념 발간자료집』, 가족구성권연구소.

현재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원가족이나 이성애결혼 중심의 삶의 기반인 ‘그런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 흐름이 가속화 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고자 하는지, 내가 누구랑 어떻게 관계 맺고 살고자 하는지를 국가 사회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기획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021년 1월 26일에 진행이 되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가족을 ‘정상적인 가족’ 대 ‘취약가족’으로 구분해 온 오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형태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법률혼·혈연관계를 넘는 가족들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위의 제 4차 개정안의 관점의 변화는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한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1) 법률혼·혈연중심의 가족개념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인 노력의 미흡으로 인해서 정책 대상을 한정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지 못했으며 2) 보편적인 가족정책이 아니라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새터민 가족 등을 위한 가족유형별로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낙인을 강화해왔다는 것이 지적된 한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가정법 개정을 위한 논의들이 법의 개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가족상황차별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과 가족정책의 방향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가족상황차별이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제도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발제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차별이 무엇이다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제도가 어떠한 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해 왔는지, 그리고 가족의 정상성 유지를 위한 정상인구, 정상가족의 가치가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을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배제하고, 문제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과 연결되는지를 주요하게 질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족화된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차별을 공고히 해 온 가족제도와 가족상황차별의 연결성을 질문하면서 가족상황차별 해소가 다양한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권의 영역과 교차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가족화된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가족상황차별

‘가족화된 사회’는 가족이 친밀함의 공동체가 아니라 출생부터 죽음까지 가족 안에서 생존과 돌봄모든 것을 보편화 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정상인구, 정상가족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회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해소는 ‘가족 같은 사회’,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온 ‘가족화된 사회’를 해체 시키는 것이며, ‘그런 가족과 사회의 유지’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해소는 개인이 가족관계나 가족 내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며, 가족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내가 의지하고 함께 삶을 살아내는 관계들이 국가 사회에 의해서 문제화, 낙인화 되지 않는 다층적인 권리들을 제기 하는 과정이다. 일차적으로,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논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을 평등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족상황차별은 단순히 가족차별이 아니라 가족을 여러 차별이 중첩되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을 둘러싼 관계망 또한 단일하게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인 위치

와 상황, 관계성, 위계를 가시화 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은 가족형태별로 발생하는 차별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 전반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가족 내의 돌봄역할을 부과하면서 노동권의 침해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나, 가족구성원 중에 성소수자나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다는 이유로 경험되는 차별이나 제도적으로 성소수자 커플이나 비혼동거커플 등이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강제되는 불이익 등을 포함한다.

가족상황차별은 ‘가족화된 사회’ 질서와 가족의 정상성을 구축해 온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가족 상황차별을 특정한 소수자의 삶에 대한 차별로만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삶보다는 가족에게 의존되고, 가족단위로 생존이 일임되는 ‘가족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침해되기 쉽고 누구도 가족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성간에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언제 결혼할거냐’ 라는 질문이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에서 혼인·혈연에 기초한 가족제도 경계의 안과 밖은 공고하지 않다. 강력한 가족중심주의에 기반해서 복지제도뿐 아니라 교육, 주택, 일자리, 심지어 병수발조차도 가족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가족유지를 위한 기능이나 역할로 소환될 수밖에 없다.⁵⁾ 일차적으로 혈연가족이 돌봄이나 생존을 담당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돌보지 않고 국가가 돌봐야 하는가’ 라는 화성시장의 차별적인 발언들은 ‘가족화된 사회’ 질서 속에서만 이해가능한 가족상황 차별의 한 단면이다. 또한, 양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가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의 효‘를 실천하는 노동자로 묘사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이 가족을 경유해서 상상되는 사회를 보여준다. 장애인 시설에서도 시설 종사자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방식들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화된 사회’ 질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드러내며,⁶⁾ 장애인의 자리는 가족 안이 아니면 혹은 가족 같은 시설뿐이라는 ‘가족화된 사회’를 공고히 한다.⁷⁾ 또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김지은을 피해자답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갔던 반복적인 말들이 “이혼녀이기 때문에”, “혼인 경험도 있는 사람이” “이혼까지 한 주제에” “결혼해준다고 했으면 안 그랬을 이라는 2차 가해의 말들은 ‘정상가족 유지’를 공고히 하는 것들이며,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를 안희정의 아내로 호명하는 상황에서도 ‘가족화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⁸⁾ 이러한 차별들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공고히 하는 성폭력의 상황에서도 가족의 정상성과 여성에 대한 성적낙인 등이 교차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이성애가부장제 가족질서의 유지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을 배치하는 권력적인 구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화된 사회’는 가족을 통한 통치의 역사와, 사회 질서를 확립해 온 한국 가족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한국 사회에서 1961년에 처음 실행된 가족계획사업부터 가족의 정상성을 통한 삶의 규율은 작용해 왔고, 가족은 출산조절운동, 산하제한론, 우생학의 토대 속에서 사회에 이로운 ‘인간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 무엇보다, 가족을 통한 통치로의 전환은 정상과 비정상, 인구집단을 수용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에 기준점이 되어왔고, 교육, 노동과 생산성, 병역, 건강, 준법의 의무 역시 우선적으로 모두 가족을 통해 규율해 왔다.⁹⁾ 이렇듯, 정상가족, 정상신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

4) 더지(2010) “가족상황차별의 정의와 차별 사례”, 가족구성원연구모임(현, 가족구성원연구소), 6차 가족정책포럼.
 5) 장경섭(2019)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6) 나영정(2020) “누구와 함께 시설사회에 맞설 것인가”, 시설사회(장애여성공감 위음). 와이온.
 7) 김다정(2021) “가족과 시설을 넘어, 시설화된 사회를 해체하는 가족 정책을 바란다”,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 발제문.
 8) 김지은(2020) 김지은입니다. 불알람.
 9) 조은주(2018)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

은 가족을 경유해서 작동해 왔고, 가족구성원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형성되어 왔다.¹⁰⁾ 이러한 가족제도는 생존단위로서의 가족, 인간재생산 단위로서의 가족,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상으로서의 가족의 가치를 통해서 개인의 권리보다는 ‘가족화된 사회’ 질서의 일원으로 개인들을 규율해 왔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196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부터 부양의무자 조항이(일제시기에 들어옴) 들어왔고, 그 법에서 노동능력과 무능력자를 구분하고,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생존이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¹¹⁾ 이러한 상황은 가족이 친밀한 관계의 영역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영역 전반에 생존을 위한 안정망으로 존재해 왔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가족의 부재는 삶의 의지치의 부재로 상징되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상황의 변화는 ‘이성애-결혼-출산-돌봄-죽음’을 기반으로 기획되어 온 생애정상성의 위기나 성별이분법에 기반을 둔 부양자모델 등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여성과 소수자들이 생존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관계의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 때 가난한 가족도 살 수 있다”라는 요구들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다양한 소수자의 삶을 배제하고, 가족질서 유지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온 사회를 바꾸어 내는 과정이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상황차별 해소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족화된 사회’를 변형시키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연대를 논의하는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3. 기능주의적인 가족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가족상황차별

지금까지, 가족제도는 이성애규범적인 가족질서의 경계를 넘는 존재들을 사회적으로 근본이 없는 존재들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 대상은 미혼모,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의존되는 존재로 간주되는 장애인들로 연결되며, 결혼하지 않은 독신여성은 출산을 기피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문제화 되어왔다.¹³⁾ 특히,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삶이 이상적이며, 어떠한 역할이 국민의 의무인지를 규정하는 법은 이미 많이 알려진대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이자 기본이념인 제2조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한 제4조 2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이 법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인의 삶을 동원하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출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재생산 기능을 국민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드러나는 ‘정상인구’, ‘건강가정’이라는 생애 정상적 규범은 단순히 법적인 조항을 넘어서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 차별을 정당화 해 왔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구현’이 ‘국민’의 역할로 규정된 것은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지 않는 개인은 당연히 차별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이 아닌 가족을

10) 배은경(2021) 현대한국의 인간재생산. 시간여행.

11) 윤홍식(2019.), 『한국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2권):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서울:사회평론아카데미.

12) 김윤영(2021) “사회보장제도의 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요건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중심으로”,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 발제문.

13) 김순남(2019) “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정상가족 모델을 넘어서”,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 pp. 175-193, 창비

중심으로 신분등록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개인의 생애를 상상할 때 가족을 경유해서, 가족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런 가족’이 부재한 개인들은 차별에 놓여 질 수밖에 없다.¹⁴⁾

기능주의적인 가족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는 성차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혹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이자 시민권의 토대로 간주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취약가족, 위기가족 대 정상가족의 구도를 공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경험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적 경험을 차단하고 문제화 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다문화 가족법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규정 자체가 ‘결혼·출산’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제하는 성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배우자’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는 부재하다. 또한, 다문화의 규정이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으로만 가족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이주배경의 아동의 기본권과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¹⁵⁾ 또한 국민 내부에서도 인구정책의 미명아래 선별적 복지와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시민을 분류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인구정책에 기반해서 작용하는 기능주의나 복지의 선별성은 2021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운영지침에서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별첨3’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나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가 추가서류로 제시되어 있는데 각서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을 분류하는 사회에서 소위 ‘정상 가족’ 안에서의 삶은 행복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p>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성실하게 출산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당청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p> <p>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치에 대해 이의제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p>	
① 신청자	
② 진단서 발급일	년 월 일
③ 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④ 요양기관명	
⑤ 담당의사(면허번호)	()
<p>20 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14) 통개(2019). “가족, 돌봄과 친밀함의 공동체”,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평등정책 토론회.

15) 한희, 2019.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권리와 사회보장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평등정책 토론회.

무엇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건강가정’ 그리고 ‘건강성’은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누구인지, 출생의 ‘정상성’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을 반영하며, 출생의 ‘정상성’을 수행할 수 없는 존재들은 쉽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나 재생산권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과 연결된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강제적 불임수술을 요구받고, 재생산의 기회가 박탈당하며, ‘정상부모’를 가질 수 없는 아이의 미래는 ‘순수한’ 아이일 수 없으며, 재생산 중심의 국가의 미래에도 부응할 수 없는 존재로 치환되고 있다.¹⁶⁾ 또한, 장애인이나 10대, 트랜스젠더의 재생산 참여가 어려운 것은 생식능력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법적 문화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사회경제적인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¹⁷⁾ 이렇듯, 정상인구, 정상가족의 구도 속에서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면 태어나자마자 자녀도 미등록 체류자가 되며, 이주결혼 후 이혼 시 귀화나 영주권 취득 전이면 이혼시 본국 귀국이 원칙으로 작용하는 배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¹⁸⁾

출생을 위한 도구로서의 시민의 삶이 아니라 실제 서로를 돌보고, 다양한 친밀적 유대를 만들어가는 개인들의 삶에 주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 기반한 인간재생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돌보고, 상호의존하는 삶을 재생산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방향을 만들어가야만 한다.¹⁹⁾ 이러한 지점에서, 가족상황차별 해소는 ‘정상인구’를 선별하는 인구 중심의 사회를 재편하는 것과 교차될 수밖에 없다.

4.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관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권리와 가족상황차별 해소

시민권으로서의 가족상황차별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집과 가족관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물음과 밀접하게 연결 된다²⁰⁾.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선가정, 후 사회보장’이라는 미명아래 ‘강제적인 집’에 머물러야만 할 때 개인의 존엄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이자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행위무능력’이라는 판단으로 부모가 ‘거소지정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살 것인지, 누구랑 살 것인지를 지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은 취약해지며, 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가족을 떠날 수 없을 때 개인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폭력이나 위계가 작동하는 관계를 떠날 수 있는 권리는 반차별로서의 가족을 정치화하는 흐름의 핵심적인 권리의 층위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전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되지만 과연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집은 안전한 곳인지, 그리고 집이 안전한 곳일 수 있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들을 환대하는 사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피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지원금 또한 세대주 중심으로 주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에게 평등한 ‘안전한 집’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떠날 수 있는 권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²¹⁾

16) 박종주(2018), “재생산 담론과 귀어한 몸들”, 배틀 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pp. 243-266. 후마니타스.

17) 나영정(2018), “낙태죄 폐지 투쟁의 의미를 갱신하기”, 배틀 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pp. 267-287. 후마니타스.

18) 허오영숙(2016), “소수자 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2016.08.23.) 토론회 토론포문.

19) 나영(2021), “이제 인구재생산이 아닌 삶의 재생산을”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 발제문.

20) 공현(2019) “가족해소의 권리”,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평등정책 토론회.

21) 송지은, 정용림,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보낸 ‘재난경보 문자’들”, 알다(2021.01.24.).

‘위기청소년’ 지원에서도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 청소년이 아니라 가족의 ‘정상성’에서 벗어난 청소년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은 떠날 수 있는 권리의 부재는 가족상황차별의 중요한 토대임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건강·상담·자립·법률·학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모든 가족에게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 대한 것이 아니라, 만 9세 ~ 만 18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72%이하이며, 생활, 건강지원은 65%이하여야 하며 지원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중위소득 72%이하인 소위 ‘위기가족’의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을 드러낸다.

떠날 수 있는 권리는 삶의 자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의 생애이행기에서도 삶의 불안정성을 최소화 하는 사회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성커플의 경우에 함께 살다가 관계가 해소 될 경우에 주거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사회적인 권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관계를 떠나는 것은 삶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소년이 탈가정을 했을 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주거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30세 이전에 혈연가족에서 독립하는 경우에 분리된 독립세대로 인정되지 않아서 원가족의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이 위태로워질 때, 우리에게 떠날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²²⁾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족과 단절해서 사는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제가 작용하는 사회에서는 폭력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고 떠날 수 있는 권리는 부재하다는 것을 다음의 네이버 상담 사례에서 드러난다.

상담질문: 가정폭력 전과를 가진 친부의 부양 의무 포기 가능할까요?

태어나서부터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친이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왔고 학창시절 내내 급식비 육성회비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늘 주변의 동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한차례 아주 큰 싸움 후 3년여 동안 별거하였다가 다시 화해하시고 마지못해 세 자매 저희 모두 받아들여서 조용히 지내다가 모두 결혼하여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7년 여름에 다시한번 부모님이 크게 싸우고 저는 부모님, 자매들과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많이 다쳤고 그로인해 아버지가 징역을 살았다는 친척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아주 커서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휴직까지 어렵게 하게 되며 생활고에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저희 자매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법원 송달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한번 제대로 내준 적 없는 무능하고 폭력적인 가정폭력범인 친부를 상대로 부양의무 포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이버, 2020년 02.14)

답변: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재판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는 2순위 부양의무로서 자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궁핍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지원하는 생활부조의무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과거에 자녀에 대한 의무를

22) 김경서(2021), “그 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 수 있나요?-주거권과 가족구성권의 교차성에 주목하기”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 발제문.

다하지 않은 점은 재판에서 부양의무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는데, 부모의 부양료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료 재판에 참석하여 과거 학대를 받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 2020년 02.14)

떠날 수 있는 권리가 부재할 때 정주할 권리 또한 취약해 질 수밖에 없으며, 삶의 자리는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다. 가족상황차별 해소는 왜 집을 떠났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결혼·혈연가족을 넘어서 ‘나로서 존재’ 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5. 가족상황차별 해소를 위한 교차적 관점으로 가족정책 구축하기

가족형태나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은 단순히 가족의 ‘정상성’을 공고히 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 노동, 의료, 연금 전반에 걸쳐서 작동하는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차별과 낙인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코 가족정책으로만 실현될 수 없으며, 사회적인 불평등을 가족정책안에서만 해결하고자 할 때 가족정책은 고립 될 수밖에 없다. 노동권,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정책과의 교차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재생산권이나 탈시설 정책과의 유기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시민으로서 경험하는 불평등 해소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개인들의 시민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이들의 자유로운 가족 구성과 가족실천이 가능해 진다는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²³⁾

이러한 지점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서 모든 가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관점이 들어왔다는 것은 가장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에서 처음으로 삶의 안정망에 대한 논의가 들어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삶의 안정망의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이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 지금까지 ‘맞춤형’ 가족 정책의 대상이었던 한부모 가족 여성의 빈곤율이 왜 36%가 되는지, 그리고 국가는 이토록 심각한 빈곤을 왜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했는지, 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존재해 왔지만 저소득층의 삶을 공고히 해 왔는지, 그리고 왜 많은 한부모 지원예산이 실제적인 주거나 삶의 자립보다는 한부모 시설 유지와 관리에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즉, 한부모의 여성의 문제는 혼인 해소 이후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상속제도, 양육권, 혼인중심의 가족구성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이 교차적으로 작동한다.²⁴⁾ 무엇보다, 정상가족의 독점성이나 부부중심의 양육, 노동, 돌봄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여전히 그 외곽의 가족들은 잔여적으로 위치지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아동돌봄권에서도 양부모가 있는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돌봄휴가를 보면 한국은 양부모는 118주의 유급휴가, 한부모는 65주(여성)와 52주(남성)의 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²⁵⁾ ‘정상가족’의 독점성이나 부부중심적인 모델은 지속되며, 가족다양성의 이름으로 여전히 잔여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에 머무르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차별금지의 조항에서 성차별을 입증하는 과정

23) 김순남·김원정·나영정·성정숙·유화정(2018),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체성 및 활성화 방안.

24) 오진방(2021) “재생산권:보편적 출생등록과 입양과 양육을 함께 논의하기”,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토론회 발제문.

25) 동아일보. “한부모 가정 빈곤률 12배 높아. ‘육아휴직 별도 규정 필요’”, 2019.07.23.

의 어려움 속에서 2000년대 이후 도입된 가족돌봄차별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족돌봄의 의무가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현재 가족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가족돌봄을 담당할 사람이라는 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교차적으로 제기하고 있다.²⁶⁾

무엇보다, 교차적인 관점으로 개인이 관계 맺는 가족을 사유해야하는 이유는 개인의 성별, 나이, 장애, 질병, 이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조건이 가족관계 안에서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노동, 주거, 의료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이슈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적 소수자들의 가족 구성이 법적·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러한 차별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족상황차별 해소는 가족정책만으로는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으며, 가족의 정상성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권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제기하는 것이며, 여성정책, 가족정책, 노동정책 등 분절적인 접근에 대한 제한된 인식을 바꾸어 내는 과정이다.

6. '가족'에 대한 실천적 접근으로서의 가족상황차별해소

현재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결혼하지 못한 삼포세대라는 이름아래 소환되는 기존 가족복원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근대가족주의의 틀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관계를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가족을 규범적인 형태로 고정된 단위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돌봄, 보살핌, 친밀함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²⁷⁾ 이성애 결혼, 혈연 중심으로 체계화된 가족법의 규정은 의료, 질병, 죽음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나, 그러한 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관계인의 존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특정한 가족' 형태에 속하고 있음을 전제함으로써 가족 내부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성애 예비부부-결혼-부모-조부모라는 고리로 생애를 한 단위로 묶고, 그러한 단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혈연·결혼제도 안으로 생애의 '정상성'을 만들어갈 때 많은 개인들은 인생의 특정 시기만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될 뿐이며, 더구나 가족관계에 진입하지 않는 개인들은 아예 배제될 수밖에 없다.²⁸⁾

2020년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과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을 통해 모집한 온라인 패널 3천 명의 조사에서 동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현재 함께 살지 않은 애인/파트너가 있는 221명에게 동거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응답자들은 함께 살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30.3%), 향후 파트너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해서(16.3%), 동거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가 부담스러워서(15.8%), 현재의 파트너와 동거생활이 잘 맞는지 확신하지 못해서(12.2%), 부모 또는 자녀 등 가족의 반대로 인하여(10.9%), 동거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10.4%) 동거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보다 주거 공간

26) 김영미(2020), "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 금지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36(1):1-26.

27) 김순남·김원정·나영정·성정숙·유화정(2018),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체성 및 활성화 방안.

28) 김원정(2013), 「가족페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미간행).

마련의 어려움이 크다는 결과는 동거에 대한 인식변화를 감지하게 하고, 시급한 정책과제가 주거권 확보라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²⁹⁾ 위의 조사결과에서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으로 가족으로서의 지위나 보호자 자격을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장 크게 언급하고 있고, 애인/파트너와의 동거에 대한 생각에서도 동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편견보다는 실제 함께 삶을 공유하고, 생애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삶을 이어주고, 삶을 살아내게 하는 돌봄, 친밀성, 상호협조를 둘러싼 실천적인 양상은 다양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실천이 지속될 수 있는 주거권이나 사회권의 확보는 핵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연구”에서도 이성애 혈연중심으로 삶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가족’을 실천하면서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등을 공유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다양한 상호의존관계망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⁰⁾ 이러한 생애 변동과 관계성의 변화는 2020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298명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조사대상자는 친구(37.6%), 동성연인(35.2%), 이성연인(20.5%)에 기반하며, 이들에게 가족의 조건은 ‘강한 정서적 유대감’ (50.3%), ‘인생의 미래 함께 계획’ (26.2%)으로 조사되었고,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관계’ (2.0%)이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으며, 현재 같이 사는 사람과 이후에도 살겠다는 비율이 70.1%로 관계의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³¹⁾ 이러한 조사는 ‘더 이상 당연한 가족’이 없다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며, 가족적인 결속은 법적인 구속이나 혈연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위에서 일상적으로 가족상황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가족구성권연구소와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이 함께 진행한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에서 3천명의 응답자 중에서 19세 이후 1인 가구, 이성파트너와의 동거, 동성파트너와의 동거,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공동체가족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법적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경험한 사람을 제외),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응답자는 2217명이었다. 위의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가운데 경험한 차별과 대응의 양상에서 “가족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41.0%, 모임 참여 거절의 경험은 21.8%, 육아나 간병에 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없었던 경험은 35.2%, 가족에 대한 험담을 들은 경험은 30.2%,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험은 33.8%, 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사한 적이 있는 경우는 33.4%,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직한 경우는 28.7%, 직장 지원을 포기한 경험은 28.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가족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편 44.8%, 육아나 간병의 어려움을 나누기 어려움 37.7%, 갈등이나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기 어려움 35.8%를 많이 응답했고, 남성은 가족상황 숨김 38.2%, 이사를 고민 33.9%, 나의 가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30.7% 등을 높게 응답했다.³²⁾

29) 추추희·나영정 외 10인(2021),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출판부.

30) 김순남·성정숙·김소형·이종걸·류민희·장서연(2019),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연구’, 가족구성권연구소.

31) 김영정·기나희(2020),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비혼·비혈연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2) 추추희·나영정 외 10인(2021),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전남대출판부.

민법 779조의 가족정의나 건강가정기본법의 조항들은 사회보험, 연금, 세금, 주택청약, 병원, 은행대출 자격, 보험승계, 취업 및 채용과정, 사내 복지제도 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영역 전반에 걸쳐서 민법의 가족의 정의는 생애과정에서 삶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들을 지우고 무연고화 하는 사회를 정당화 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써의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나, 동성결혼에 대한 인정이나, 개인이 지정하는 1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 등은 혐오와 차별로 인해 닫힌 공존의 문을 새롭게 열면서 추방되고 탈락된 사회적 소수자들을 사회변화의 주체로,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7. ‘금지’의 언어를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법’을 넘어 여성/남성, 이성애/동성애, 비장애인/장애인, 선주민/이주자, 시스젠더/트랜스젠더, 정상가족/취약가족, 생산적인 인구/쓸모없는 인구 등으로 구분되어 온 위계를 해소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권리의 완성이 아니라 권리의 출발이며 추상적인 인권 너머 모든 시민에게 권리주장이 가능해지는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탈시설, 탈가정, 탈가족화, 탈빈곤 등의 의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낙인화 되고, 개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온 여성이나 소수자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인 운동이며, 기존의 ‘그런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개인들의 삶을 집약화 하는 사회적인 가치들이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생존을 일임하는 공동체의 익숙한 문법이나 관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회귀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인 움직임에 가족 정책이 빠르게 응답해야 함을 공론화 하는 의제들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후기근대사회에서 탈정치화된 가족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새로운 사회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며, 기존의 가치로부터 탈주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사회적인 것’의 가치로 이야기 한다. 즉 사적인 가족으로 환원되지도 않고 그러나 공식경제 혹은 국가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닌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공간을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라고 부른다고 의미화 했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가정에 속박된 존재들, 경제적인 부흥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 정치적인 삶을 박탈당해 온 여러 갈래의 운동의 지형을 정치화함과 동시에 가정을 사적인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온 탈정치화 된 흐름에 개입하는 것이다.³³⁾ 결국,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가족제도를 퀴어링 하고자 하는 것은 쓸모없는 자들로 내몰리는 개인, 관계의 한 가운데에서 다른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대적인 성별이분법에 기반해서 인구의 ‘정상성’과 생애차별을 공고히 해온 ‘그런 가족’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의 문법을 ‘발명’하고, ‘탄생’시키는 것은 사회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며, 사회적인 안정망이 부재한 사회에서도 개인으로 살고자, 관계의 존엄을 지키고자 실천하고 살아낸 소수자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과 연결된다.

즉, “동일화의 폭력을 반복하지 않는 우정, 가족이라는 관계가 아니어도 맺을 수 있는 반력의 관계, 국

33) 낸시 프레이저(2017),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민으로 동화되지 않아도 국경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인정³⁴⁾ 등은 폐쇄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연결성과 다양한 생애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호공존의 토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생애변동으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는 단순히 경제위기로 인한 삶의 위기나 또다시 기존의 가족질서에 대한 복원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이성애 혼인·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안정망을 우리 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자율적인 개인이 ‘선택하는’ 관계들에 대한 존중과 원가족을 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유대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원가족에게 종속되지 않는 주거, 고용, 의료 등에서 평등한 ‘사회적’인 삶이 가능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³⁵⁾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해소이며, 새로운 시민적 연대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일 수밖에 없다.

34) 권명아(2012),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206쪽. 갈무리.

35) 김순남·성정숙·김소형·이종걸·류민희·장서연(2019),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연구’, 가족구성권 연구소.

발제문 2.

복합차별,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는 ‘가족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제시되었다. 특히「건강가정기본법」개정, 「민법」 개정 검토,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논의 지원은 평등한 가족정책 실현을 위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반차별 정책이라는 점에서³⁶⁾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정책과제인 「건강가정기본법」개정을 살펴보자면 현재 21대 국회에 10개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 중에서도 남인순,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이념에 가족 형태에 기반한 차별금지 원칙을 신설하며 평등한 가족관계 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차이가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2004 제정, 2005 시행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2020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발의)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이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가족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언설과 함께 다시금 보수개신교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차

36)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한 가족정책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1)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규정의 삭제 혹은 전면 개정, 2)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3) 가족을 경유하도록 만들어진 신분등록제도(「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9),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2019년 10월 23일 참고.

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포함 → 동성에 허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위치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 형태 차별금지 및 가족다양성 인정 → 동성혼 및 동성에 가족 허용'이라는 논리다, '차별금지 찬성 vs 반대', '성소수자 vs 보수개신교'라는 이분화된 논쟁 구도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운동이 함께 뛰어넘어야 하는 조건이다. 그보다 더 가시화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논쟁은 한 국사회에서 '차별'을 무엇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법과 제도가 어떻게 차별보호 대상을 선별하고 자격을 부여하는지,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향이 '성소수자'나 '취약하고 주변화된 가족형태'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이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³⁷⁾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차별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어 온 결과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차별금지사유의 제도적 인정 여부에 머물러왔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재에도 차별금지사유는 개인 및 집단 정체성을 1:1로 대변하는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피해 사례를 통해 법·제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은 반차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제도에서 기존에 확립된 피해 집단(established victim groups)만을 포섭하는 범주화 과정을 문제제기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 현실을 어떻게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통해 규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개별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복합차별' 개념은 바로 지배적인 사회구조에 맞서서 차별의 의미와 범주를 재구성하려는 반차별 운동의 오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언어이자,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상 규율되는 차별금지행위 중 하나이다. 이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사유되어야 할 차별 현실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 차별시정기구 및 차별구제절차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할 것인지의 차원과도 연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학문 영역에서도 교차성(Intersectionality)과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 혹은 다중적 불평등(multiple inequaliti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위 관점과 분석이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로서 차별금지법 상 복합차별의 개념 역시 운동과 정책화 차원에서 그 의미와 가능성이 더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2004년 제정 이후 줄곧 비판받아왔지만 개정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국면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해소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상황(Family status)이 어떻게 복합차별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차별금지법 상 차별금지사유로 예시되어 있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중심으로 복합차별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과정과 역사 속에서

3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 국가인권위,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2020년 6월 30일자.

복합차별 규정에 담고자 한 차별의 현실이 무엇인지, 제도를 통해 이러한 차별을 규율한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갖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조금씩 더 확장하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운동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차별금지법상 복합차별의 개념과 의미

1) 복합차별 규정과 개념

장혜영 대표발의(2020)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국가인권위원회(202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 제1장 총칙
<p>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p> <p>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직접차별)</p> <p>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급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p> <p>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p> <p>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p> <p>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p> <p>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간접차별)</p> <p>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p> <p>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괴롭힘)</p> <p>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차별표시조장광고)</p> <p>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복합차별)</p>	<p>제3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차별)</p> <p>1. 고용</p> <p>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p> <p>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p> <p>4.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p> <p>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간접차별)</p> <p>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괴롭힘)</p> <p>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성희롱)</p> <p>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차별표시조장광고)</p>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 그동안 복합차별은 ‘성별등 차별사유가 복합적·중층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차별 행위 또는 경우’ (2010), ‘직접, 간접, 교차, 중첩하여 발생하는 차별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개념’ (2010), ‘차별상황의 현실과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개념’ (2013) 등으로 설명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표시·조장 광고와 함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2가지 이상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경우를 복합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을 포함해 복합차별을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제는 「차별금지법안」이 유일하다.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고용영역만)		(괴롭힘에 포함)		
차별 표시 조장광고					
복합차별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신좌파운동의 흐름, 흑인민권운동과 제2물결 페미니즘 운동 속에서 교차차별에 대한 인식이 가시화되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흑인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유형이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인식은 교차성 이론과 분석을 발전시켜온 중요한 토대이다. 그리고 1970년대 데그라펜레이드 대 제너럴모터스(DeGraffenreid v. General Motors) 고용차별 사건, 1990년대 아나타 힐 대 클라렌스 토머스(Anita Hill v. Clarence Thomas) 성희롱 사건은 그동안 미국사회 내에서 성차별은 백인여성, 인종차별은 흑인남성이라는 특권적 위치의 경험을 기준으로 차별인정이 범주화 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한국사회에서 복합차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제정 운동을 해 온 반차별 운동의 주요한 문제의식이자 기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경험을 가진 장애여성운동의 문제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아온 과정이기도 하다.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여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남성중심적인 관점에 대항하며 ‘장애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장애여성의 존재와 경험을 기존의 ‘여성’ 의제나 정책에서 외면해 온 여성학/여성운동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³⁸⁾ 특히 장애여성공감은 장애가 차별의 주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장애와 교차되거나 중첩되는 다양한 차별의 기제들, 특히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복합차별이 단일 개별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장애인 혹은 여성 둘 중 하나의 정체성이나 경험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은 ‘장애인+여성’이라는 더하기 방식의 이중삼중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억압의 구조가 차별과 부정의를 생산하는데 서로 함께 작동한다는 반차별 운동의 인식, 이를 ‘복합차별’이라는 명명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운동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³⁹⁾

38) 이진희(2013). “장애여성문제 이중차별, 취약계층, 보호의 대상이란 낡은 규정에서 벗어나기”. 『월간 복지동향』 (174), 42쪽.

39) 장애여성운동의 복합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지성(2008), “차별의 지점이 다 다른 다양한 (장애)

이처럼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는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에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으로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별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보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기획”⁴⁰⁾에서 출발했다. 이는 복합차별 개념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해 나가는 방향보다는 복합차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차별의 작동과 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에 방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합차별을 어떻게 법에 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별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담론형성을 위한 것인지’가 질문되기도 했다.⁴¹⁾ 이는 복합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조건에서 차별금지법제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기 위한 방법으로서 복합차별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지만(복합차별 판단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 차별 구제 및 시정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다), 동시에 ‘차별의 구조이자 시스템’으로서 차별작용에 대한 담론이 차별금지법제상 차별의 정의 개념과 법률 적용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차별 운동의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2) 해외-국내 복합차별 규정의 필요성

국내와 다르게 국제인권규약이나 오랜 반차별 법제 형성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해외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차별의 교차성의 드러내는 개념을 보다 세분하고 있기도 하다. 이때는 주로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 및 삼중차별(Triple discrimination)과 같은 더하기 모델 외에도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누적차별(Cumulative discrimination), 결합차별(Combined discrimination), 복합차별(Compound discrimination),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등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최근의 논의들은 제도 상 확립된 개념으로 ‘교차차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⁴²⁾ 공통점은 차별을 발생시키는 서로 다른 근거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차차별’로 지칭하며, 이는 수학적으로 복수성의 의미를 함축하는 다중차별과는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서는 사실상 차별 개념들의 의미를 크게 구분해서 선택된 개념이라기보다 교차차별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복합차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해있는 핵심 국제인권규약들은 대부분 교차차별을 규정하며 해당 국가에서 이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

범주를 하나의 범주로 해결하고자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 반차별공동행동 6월 상상더하기 포럼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 반차별공동행동 주최, 2008년 6월 11일자; 진경(2010), “복잡한 차별,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야기”, 반차별공동행동 주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4차 <복잡한 차별 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2010년 9월 9일자.

40)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1),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 아닌 천차만별을 꿈꾸는 당신과 하고 싶은 일』, 11쪽.

41) 이숙진(2010), “‘가족상향’ 사유와 차별금지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6차 가족정책포럼 <가족상향차별의 정의와 범주: 차별금지법에 담기>, 2010년 12월 7일.

42) Timo Makkonen은 다중차별, 복합차별, 교차차별을 구분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차별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복수성의 의미를 함축하는 다중차별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andra Fredman 역시 순차적 다중차별(sequential multiple discrimination.), 부가적 다중차별(additive multiple discrimination)과 구분되는 의미로 ‘교차차별’을 사용하면서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제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 LL.M Timo Makkonen(2002). Multiple, compound and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Bringing the experience of the most marginalized to the fore. Institute For Human Rights Abo Akademi University, p. 9-12; Sandra Fredman(2016),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in EU gende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law, European Commission, p. 27-28.

약)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조 2항의 차별금지원칙을 구체화하면서 두 가지 차별금지사유가 교차하는 교차차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⁴³⁾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일반논평 역시 ‘피부색, 혈통, 민족·종족 출신’과 같은 차별사유는 성별 및 종교 등 다른 차별사유와 교차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⁴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상황에 놓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 조항들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의 한국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견해로 ‘여성차별’을 교차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권고한 바 있다.⁴⁵⁾

해외 차별금지법 중 복합차별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다. 영국 「평등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흩어져 있던 법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서로 다른 차별구제 및 시정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하나의 법제로 통합된 것인데, 이때 두 가지 속성이 결합한 형태의 ‘복합차별’(combined discrimination: dual characteristics)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게 되었다.⁴⁶⁾

「평등법」에 복합차별을 규정하는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O'reilly v. the BBC로, B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컨트리파일’ 진행자인 미리엄 오릴리라는 50대 여성이 BBC를 상대로 낸 성·연령차별 소송이다. 당시 BBC 경영자는 고령층에 집중했던 것에서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으로 ‘컨트리파일’의 방송 시간을 프라임타임인 저녁으로 옮기면서 오릴리와 비슷한 연령대 세 명의 여성 리포터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오릴리는 이러한 결정이 연령차별이면서 동시에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눈가의 주름이 젊은 시청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듣거나, 젊고 아름답지 않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성형이나 미용시술을 권유받았다는 점은 ‘젊은 시청자들이 나이든 여성 진행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방송 미디어산업의 전형적인 편견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⁴⁷⁾ 하지만 ‘나이든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연령차별이라는 점을 인정되었지만, ‘같은 나이의 남성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에 의해서 성차별로 인정되지 못했다. 다만 만약 차별의 피해자가 같은 나이의 여성만 있었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연령차별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⁴⁸⁾

이처럼 복합차별이 법체계에 담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기보다, 구체적으로 차별에 대한 판단이 논쟁이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복합차별을 규율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공감을 얻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복합차별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을까? 그동안 복합차별의 조건에 놓인 사람들의 사례가 종종 보고되기도 했지만, 복합차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그리 높지 않다. 이는 복합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차별 사안들이 단일한 차별금지사유만을 규율하는 개별법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비정규직과 같은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은 차별사유의 연속성과 중첩성으로 인해 차별적 효과가 극대화되지만,⁴⁹⁾ 이러

43) E/C.12/GC/20

44) CERD/C/GC/32

45) CEDAW/C/KOR/CO/8, “여성에 대한 직접, 간접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인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46) 홍성수(2011), 『영국의 차별금지법제 연구 - 「2010년 평등법」을 중심으로』,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47) 박성우, “노인층 차별 논란에 휩싸인 영국 지상파방송”,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21, 46-55쪽 참고.

48) Catherine Bourne, "Is it time to legislate for dual discrimination?", <People Management>, 10 Mar 2020.

한 체계적이면서 일상화된 차별 경험은 ‘복합차별’로 잘 해석되거나 가시화되지 않는다.

2.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과 복합차별

그렇다면 복합차별과 관련한 쟁점은 어떻게 복합차별을 인식 가능한 가시적인 ‘차별’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복합차별의 조건을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통해 포착하고 적절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이론을 통해 일본사회 비교연구를 진행한 신기영은 소수자(마이너리티) 연구에 교차성이 시사하는 함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소수자의 집단정체성을 본질화하지 않고 관계성에 초점을 두면서 소수자 정체성 내부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 둘째 소수자 집단의 차별 경험을 통해 억압과 차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 셋째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치적 실천전략으로서 정체성 정치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연대의 정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⁵⁰⁾

차별금지법제에서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 역시 단일하고 분절된 것으로서의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제한적 인식,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을 고유하고 고정된 것으로 전제할 위험과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피해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와 정책 변화, 운동의 역할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복합적인 차별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넘어서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수자 집단의 서로 다른 위치와 경험을 드러내기, 차별의 인정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성차별을 예로 생각해보자. 특히 면접 및 입사과정에서의 채용차별은 차별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다 채용여부 판단 기준이나 결과 자체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되거나 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⁵¹⁾

“가족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면접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심사 요소는 아니다. ... 그렇더라도 같이 면접에 참여한 해당팀 부서장의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선호 및 기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도 공식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부모 가족, 이혼한 사람 등 평범하지 않은 가족상황에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지 않는다. 동일한 점수를 얻은 지원자가 둘이라면 기타 다른 배경요소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 - 기업 인사담당자⁵²⁾

49) 박주영(2020), “차별금지법의 체계적 규율 필요성”, 민주노총 주최 <차별금지법, 노동자에게 왜 필요한가?> 토론회, 2020년 8월 25일, 14쪽.

50) 신기영(2013), “마이너리티 이론의 탐색: 비본질적·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일본비평』, (8) 참고.

51) 박귀천 외(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84쪽.

52) 박귀천 외(2015), 위 자료, 144쪽.

이러한 종류의 차별은 채용면접뿐만 아니라 임금, 승진, 배치, 해고 및 퇴직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과 관련한 차별에서 가장 밀접하고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차별금지사유는 '혼인여부', '임산출산' 및 '성별'이다. 운전기사 채용 시 응시자격요건에 '기혼자' 항목을 넣어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응시 자체에서 배제한 사례⁵³⁾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고 이혼가족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혼인여부 및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하지만 부서관 모집 시 '이혼한 여성'을 배제한 사례⁵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적용이 '여성'에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차별이면서 또한 가족상황 차별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가족상황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은 혼인여부, 임신출산, 성별로 인한 차별과 '중복차별'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차별금지사유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의 범위와 경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⁵⁵⁾

문제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로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다른 차별금지사유들과 맺고 있는 관계, 같은 정체성으로 구획되는 집단 내에서의 서로 다른 차별의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DPI 여성장애인 네트워크의 복합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장애가 있는 여성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에서는 한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⁵⁶⁾ 자궁근종을 진단 받은 장애여성은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출산할 일이 없는 '장애여성'이라는 판단에 의해 "자궁을 들어내면 낫는다"는 처방을 받는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장애여성의 성과재생산권리가 쉽게 부정되는 조건은 '장애인 차별' 혹은 '성차별'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이들은 바로 이러한 복합차별이 장애여성의 삶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관계, 돌봄역할에 대한 가족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항 상황'을 말한다. 즉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의 가족형태와 부모, 남편, 아내, 또는 자녀라는 가족 내의 위치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의 정의⁵⁷⁾

“혼인상황(Marital status)”은 인권법 10조에 “결혼, 미혼, 사별, 이혼 또는 별거 상태”로 정의되며, 동성 관계와 이성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결혼 이외의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상태를 포함한다.

“가족상황(Family status)”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는 상태”(the status of being in a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로 정의된다. 이는 또한 부모와 자녀의 “형태”(type)를 의미할 수 있는데, 혈연이나 입양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지만 돌봄, 책임, 헌신과 유사한 관계

53) 국가인권위원회 2007. 5. 3 자 06진차702 결정

54) 국가인권위원회 2006. 12. 22 자 06진차399 결정

55) 국가인권위원회(2005), 위 자료, 387쪽.

56) 사사키 사다코(일본 DPI 여성장애인 네트워크), "코로나X장애X여성 문제는 '복합차별'에서 온다", 일다, 2020년 8월 29일자.

57)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위원회 해설집』, 385-386쪽.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의 정의 조항에서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가족 형태”란 단독, 혈연 또는 비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가족 상황”이란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지원 책임과 관련된 상황을 말한다.”

를 가진 다양한 상황을 수용한다. 아동을 돌보는 부모(입양부모, 수양부모, 양부모 포함), 고령 부모 또는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사람,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가 가장인 가족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법 상 차별금지사유 ‘가족 및 혼인 상황’의 정의⁵⁸⁾

캐나다 온타리오주 <가족 상황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은 가족상황과 다른 규범의 교차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를 강조하는데, 개인은 여러 근거가 ‘교차’되어 고유한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장애여성과 달리 장애여성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뿐만 아니라 확장된 가족, 홈케어링, 지원되는 의사 결정 네트워크 및 대안가족 구성과 같은 다양한 돌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장애여성은 돌봄책임이 있는 비장애여성이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장벽에 직면하게 되지만, ‘장애 인지원정책’ 혹은 ‘가족지원정책’은 이러한 형태의 돌봄관계/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 여성의 필요와 욕구,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복합차별이 던져주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의 범주와 근거들이 교차해서 어떤 차별로 드러나는지 그 상호작용의 경로를 파악하고 구분하고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경험이 분리되거나 분절되지 않은 채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제반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차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차별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단일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기반한다. 그리고 이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이는 집단 내에서도 어떻게 서로 다른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여성’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단일하고 보편적이면 본질적인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은 여성 집단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권리를 균질화 하는 역할을 하기 쉽다. 이는 복합차별이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문제,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의 정체성과 경험이 동일하고 고정적이라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범주’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범주의 필요가 등장하는 특정한 맥락과 시기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특정한 집단정체성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차이’와 이를 위계화하는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이기보다 잠정적이고 관계적이고 상황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배제를 포함한다는 점을 우리의 현실로 인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 역시나 제일조선인 중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이고 그것도 가만히 있지 않고 표현을 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표적이 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일로 재판하게 된 것도 하나의 ‘복합차별’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법정에서 반드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복합차별은 피해자에게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은 더없이 힘들었다.”

- 이신혜 (재일코리아 2.5세, 저널리스트, 일본 재특회의 ‘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최초의 민사재판 당사자’⁵⁹⁾)

58)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2007), Policy and Guidelines on Discrimination Because of Family Status, p. 8-9.

59) THE FUL HOUSE, “‘복합차별’에 맞선 재일동포 이신혜 씨의 ‘반향 헤이트 스피치 재판’ 5년의 기록”, 뉴스통신진흥회, 2020년 5월 6일자. url:https://www.youtube.com/watch?v=qmhTGWt1xeY 참고.

가족차별 관련한 복합차별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복합차별’로 규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차별로 문제제기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함의 이유가 제한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때, ‘복합차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자신이 겪은 차별의 현실이나 특성을 올바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한 영국 BBC 성연령차별 사건에서도 역시 복합차별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은 피해 당사자가 어떤 차별적인 조건과 사회적 압력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인정’의 유무형적 이익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는 차별의 구조를 파악하기

대체로 이중삼층차별과 같은 다중차별은 그러한 조건에 처한 개인 및 집단이 그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차별의 빈도와 그 문제적 영향 때문에 더 관심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소수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정체성들(multiple identities)’에 집중해 이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차별을 잘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차별금지사유의 열거는 이러한 차별을 보다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차별금지사유는 집단 정체성에 대응하는 범주로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차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자 범주⁶⁰⁾로 의미화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상황과 돌봄의 책임과 관련된 차별에서도 마찬가지다. 차별을 판단할 때 돌봄의 역할 및 책임이 역사적으로 성별/성역할 고정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권리가 어떻게 차등적으로 제한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가족상황 차별이 적절히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족상황차별은 필수적으로 성별 조건과 권력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족 내 성별분업으로 인해 고령층 및 아동의 돌봄을 전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흔하게 차별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차별이 ‘여성’이라는 정체성 집단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저임금의 노동자들의 경우 임신양육출산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인 노동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시간, 응급상황에서의 업무 조정 등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책임 관련한 차별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돌봄역할을 수행하는 남성들에 대한 적대성과 성희롱 역시 높게 나타났다.⁶¹⁾ 이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차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돌봄의 역할 혹은 권리가 어떻게 성별과 계급(이를테면 고용형태 및 사회적 신분) 따라 차등화되는지를 질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얽혀 있는 억압의 구조 속에서 (가족돌봄과 관련한) 차별이나 불평등이 어떤 경제적 착취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젠더 수행을 촉진하고 억압하면서 강화되거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60) 박한희, “여성 범주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에서 차별을 질문하기” 토론문, 여성문화이론연구소&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 사회정의와 평등을 일구어온 여성과 소수자들의 역사와 담론』, 2020년 2월 13일.

61) 김영미(2020), “오래된 문제, 새로운 전략: 가족돌봄 차별금지 개념 도입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36(1), 15-16쪽.

차별의 구조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각기 다른 위치의 개인/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살피지 않는다면, 가족차별을 해소해나가기보다 ‘어떤 개인/집단이’ 돌봄의 위기를 겪는가를 중심으로 법제도가 구성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다시 돌봄의 의무를 여성이라는 성별 집단에게 부과하고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돌봄의 권리가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노동자들에게만 보장되는 정책을 보편적인 가족정책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경제 정책으로부터 가족정책이 분리고립되고, 가족/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 개인’의 문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교차성 개념을 발전시킨 크랜쇼는 구조적 교차성(structural intersectionality) 개념을 통해 교차성이 일차적으로는 정체성의 나열이 아니라, 폭력과 차별의 취약성(vulnerability)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나 제도의 방식을 문제삼는다.⁶²⁾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성별화된 ‘여성 노동’과 인종화된 ‘이주민 노동’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회 노동시장 구조, 인종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국가민족주의와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더 가시화될 수 있다. 복합차별이 정체성이나 정체성의 범주화만의 문제라면, 왜 특정한 정체성이나 차이가 왜 차별을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하기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체성, 어떤 차이가 범주화 과정을 통해 중요해지는지를 권력관계를 통해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의 범주 자체도 권력관계-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특정한 지위에 배치될 수 있고, 그 권력관계의 역동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상 차별금지사유를 사고할 때, 정체성과 그 범주화 과정, 그것을 작동시키는 권력관계를 문제삼으면서 어떤 차별 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3) 복합차별, 연대의 정치의 기반

복합차별은 제정 운동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른바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 (2007년 법무부가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라는 7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채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사건)를 계기로 기사화 되었고, 이것이 운동의 담론과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경험 속에서 체화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적지향이 들어가더라도, 학력이나 가족형태나 이런 차별을 받는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성소수자만 들어가면 그만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중략) 그런 거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걸 여성운동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 여성운동 단체C, 사례5

지금은 어떠한 내용을 가져다 놔도,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직은 장애 쪽에서 보면 합의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때 장애운동 단체랑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직장과 가정의 양립 부분을 할 때 우리(여성운동진영)는 이것이 정규직 여성들에게만 가능한 건데.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까지 활용가능한 것으로

62) 신기영(2013), 위 자료, 29쪽.

만들 것이냐 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장애 여성에게는 얼마나 활용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서 아무리 이상적인 법을 가져다 놓더라도, 성소수자들이 이것이 왜 남녀로만 구성되나, 이렇게 문제제기 하면 또 여기서는 합의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별을, 어떻게 말을 할래?’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거지.” - 여성운동 단체A, 사례 163)

정체성에 정치가 비판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단 내 차이를 본질화하고 결국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억압적이고, 외부적으로는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⁶⁴⁾ 이는 종종 집단 내 하위집단의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종종 어떤 집단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떤 우선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로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복합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수연의 분석처럼 ‘차별의 의미, 정체성의 정치학에 대한 급진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고, 이는 운동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개별화된 운동의 이슈와 방법들을 성찰하는 과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 법제도, 가족정책이 특정한 종속집단으로서의 ‘취약 가정’을 보호하거나 포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인 사회문제에 결부된 방법론이자 필수적인 정책이라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권리들을 제기하는 운동들이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 그 연대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과 관련한 ‘차별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단일한 정체성에 기반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정당화하고 강화해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차별금지법 상 복합차별은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

차별금지법 상 차별판단은 주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어떠한 차별금지사유를 근거로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발생한 차별의 피해 및 불이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쳤는지 즉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떤 특정한 원인이나 근거로 판단되기 어렵거나 환원되기 어려운 형태의 복합차별은 어떻게 제도 내에서 차별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해외 차별금지법제 사례로 소개한 영국 「평등법」의 경우, 구체적인 복합차별 사건에서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인정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의 법제도가 복합차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특정한 유형의 차별이 차별로서 확립되기 전까지 차별의 피해자는 복합차별을 받았는지의 여부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평등법」은 차별받은 사람이 보다 차별 주장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합차별의 금지에 대한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각각의 속성을 이유로 한 직접차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평등법」이전의 개별 차별금지법제 하에서는 하나의 속성에만 근거해서 각각 차별 진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복합차별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⁶⁵⁾ 하지만 복합차별에 도입된 이러한 조항은 현재는 실행되지 않고

63) 최수연(2011), “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차별금지법(안)이 촉발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각 22쪽, 25쪽.

64) 신기영(2013), 위 자료, 30쪽.

유보된 상태이다. 영국의 평등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경영에 대한 규율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⁶⁶⁾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이러한 유보가 더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 복합차별 역시 차별유형 중 하나로 규정한 조항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에 대한 가이드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차별판단이 주로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복합차별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원안에서는 복합차별을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사유가 중첩적·교차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복합차별을 차별로 보지 않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중첩적·교차적으로 작용한 각 성별등 차별 사유별로 각각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 사유가 1개라도 있으면 이 법에 따라 차별행위로서 금지되고, 그 사유가 중첩적·교차적이라 하여 금지되는 효력에 차이가 없음. 차별사유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그 해당 차별사유에 상응하는 정당화 요건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불필요함. 따라서 법률 효과에서 단순 차별과 차이가 없는 복합차별의 개념을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⁶⁷⁾

“...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을 벗어나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고용 평등법의 조항들을 구체적 사건에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이 법조항들의 취지가 더 잘 살아 고용 성 차별 해소로까지 갈 수 있게 판결들을 내린다면 법의 취지를 살리고 법의 목적을 이루는데 법원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⁶⁸⁾

기본적으로 차별의 구제는 기존의 차별에 대한 해석과 많은 판례를 쌓아온 두 가지 통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을 증진시킬 의무가 일차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다면,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고 정의의 기본적인 방향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차별금지법 상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다. 차별의 판단은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이자 새로운 법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복합차별 조항이 어떻게 차별을 다르게 판단하고, 현실의 차별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복합차별이 차별 당사자의 다층적인 차별의 경험, 차별의 구조를 복합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복합차별의 법제도적 실행에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바로 그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차별의 현실을 사회적 쟁점으로 길

65) 홍성수(2011), 위 자료, 21-22쪽.

66) 심재진(2017),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강원법학』, 50, 57쪽.

67) 법제처, 권영길 의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2011년 9월 16일.

68) 박진영(2011),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기능”, 『21세기정치학회보』, 21(2), 80쪽.

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틀 안에 자신의 경험을 맞추고 재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복합차별의 사례들을 복합차별로 언어화 하고 그 차별의 내용과 작동방식을 구체화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차별금지법상 복합차별 규정을 통해 제기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권’이 새로운 권리담론으로 제기된 이후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식이 점차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왔던 것처럼, 복합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담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결과가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될지 상상해보게 된다. 특히 특정한 입법을 통해 법제도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를 떠올려본다면, 실제로 운동의 관점과 성과들이 차별판단 기관들에 어떻게 수용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는 그 취지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의미화되는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 복합차별이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재구성해나가는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또 반차별 운동들의 연대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그 사회적 쟁점을 가시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가족은 ‘국민’으로만 구성되는가?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며칠 전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민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를 잃어버렸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미등록 상태인 그는 경찰에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되었다가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다. 그가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동안 남편은 해고되었다. (경향신문 2021.4.26.)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이 될까?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한국 국적자 중심성은 견고하다.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 가족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려면 국민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 헌법의 주체는 ‘국민’이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법 역시 국민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건강가정지원법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라는 전제에 동의한다. 다만, 한국인+외국인의 결합만을 다문화 가족으로 전제한 이상 이주민 가족의 문제는 풀릴 수 없다.
- 다문화가족 정책 기조는 한국인 2세를 출산·양육할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이다.
 - ‘정상 가족’이거나 한국 국적 자녀 유무에 따라 체류 안정성, 혼인간이귀화 조건이 달라짐
 - 한국 국적 자녀 여부에 따라 사회보장이 예외적으로 적용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으나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어 현실과 정책 사이의 괴리가 크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국 남성과 아시아 외국 여성의 초혼으로 자녀 출산을 전제로 하였다. 국제결혼 추이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은 초기 입국 단계를 거쳐 정착 단계 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보다 생계 및 취업, 자녀 교육 등으로 욕구가 변화하였다.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 필요 역시 증가했다.
- 무엇보다 이주여성 한부모, 이주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재혼, 동거, 결혼제도 밖 관계와 그 사이의 자녀 출산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한국인+외국인 결합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범주는 이러한 다양한 분화를 포괄하지 못한다.
- ‘결혼이주외의 이주민의 가족 이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 규모, 가족생활 현실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 2014년 외국인 고용 원자료 분석 결과 외국인 중 49.3%에 해당하는 52만명 가량이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김이선외, 2015)’
- 미등록 이주여성이 혼인 관계 외에서 자녀 임신·출산을 경험할 경우를 상상해 보자.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어떠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장 갓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을 못할 수 있다.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

수신처 :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사머스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귀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인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 세대와 여성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의 인구증가와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인 연령을 늘린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오니 희망자 모집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선 진행 / 진혼유 위한 만남 등 지원

- ☞ 맞선 후 만남을 위한 주거지원 : 문경시 주택 무료지원(3 - 6개월 / 1인 1실)
- ☞ 예비신랑 집 방문 출퇴근 농사 / 생활 경비 등 지급 : 매월 200여만원
- ☞ 결혼 후 계속 공부 희망 시 : 유학경비 전액지급(문경시 장학금 50%지급)

출산장려금 확대지원(2019-2022 출생아)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축 하 금
첫째아	360만원	10만원/24개월	출산 100만원/등축하 20만원
둘째아	1,400만원	30만원/40개월	출산 100만원/등축하 1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35만원/40개월	
넷째아 이상	3,000만원	45만원/60개월	출산 100만원/등축하 2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

구 분	지 원 사 업
임산부	• 임산초기 무료산전검사(2회).....• 검진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검사) • 임산부 차량 표지 발급 • 산모 영양제 지원(임산제, 회복제, 영양제)
영유아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출산 축하선물 지원(안기류조, 출산 축하 키트 지급)

보육료 지원

구 분	0세	1세	2세	3~5세
영유아 보육료	484,000원	426,000원	353,000원	260,000원



※ 참고 자료

서울시 자치구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팀 명칭

* 출처: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2021.4.25. 기준)

자치구	국	과	팀
강남구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아동친화정소년팀 돌봄드림스타트팀 아동보호다문화팀
강동구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공공보육팀 민간보육팀 여성복지팀 출산다문화팀 어린이회관팀
강북구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여성복지팀 출산장려다문화팀
강서구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보육1팀 보육2팀 저출산대책팀 (다문화가족업무) 여성정책팀
관악구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여성친화정책팀 출산다문화팀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출생지원팀 여성다문화팀
구로구	생활복지국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정책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금천구	복지가족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보육관리팀 여성정책팀 외국인다문화팀
노원구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출산장려팀 (다문화가족업무)
도봉구	복지지원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보육정책팀 보육운영팀 출산다문화팀
동대문구	복지국	가정복지과	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여성정책팀 출산다문화팀
동작구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드림스타트팀 청소년팀 출산다문화팀
마포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출산다문화팀
서대문구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 여성정책팀 출산다문화팀
서초구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보육운영팀 어린이집확충팀 출산장려팀 (다문화가족업무)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보육기획팀 보육운영팀 여성정책팀 (다문화가족업무)
성북구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여성복지팀 출산다문화지원팀 드림스타트팀 아동보호팀 온종일돌봄팀
송파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공공보육팀 민간보육팀 출산다문화팀
양천구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여성친화도시팀 (다문화가족업무) 아동청소년친화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영등포구	복지국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친화팀 청소년팀 다누리정책팀 다누리지원팀
용산구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보육정책팀 보육운영팀 출생다문화팀
은평구	교육문화국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다문화가족업무) 여성정책팀 아동친화팀 아동보호팀 반려동물팀
종로구	복지경제국	보육지원과	보육지원팀 보육시설팀 온종일돌봄팀 출생다문화지원팀
중구	생활복지친화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출산다문화팀 여성정책팀
중랑구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가족과 시설을 넘어, 시설화된 사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제정을 바란다.

• 김다정 (장애여성공감)

지난 1월 26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가족을 ‘정상가족’과 ‘취약가족’으로 이분해 온 오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형태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 속에서 등장하였다. 이 관점의 변화가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족상황차별 전반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가족상황차별이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제도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세밀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가족정책의 방향을 필요로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토론문에서 는 다양한 차별 상황 중에서도 시설화된 삶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제도가 시설 사회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상인구, 정상가족의 가치가 어떻게 소수자들의 삶을 시설화 하는지, 시설화된 삶은 문제적인 집단으로 분류된 소수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지원 대책을 시행하였다. 이 지원금은 세대주를 중심으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국가는 많은 정책에서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를 가족에 두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형태 중에서도 국가가 기본 단위로 삼는 가족은 ‘정상가족’이다. 앞서 이야기 한 재난지원금, 부양의무제,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그러한데, 특히 지원정책에서 가족을 통해 돌봄과 자원을 개인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달 체계를 통해 국가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돌봄 공백을 가족에게 전가한다. 물론 그 지원의 양조차도 필요량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개인이 아닌 가족을 통한 전달과정에서 그마저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가족이 돌봄 것을 거부한다면, 혹은 돌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은 방치, 고립된다.⁶⁹⁾

국가 정책 속에서 가족은 돌봄의 위탁처인 동시에 ‘정상인구’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재생산 도구로 위치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사회재생산 기능을 국민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국가가 시민들을 인구정책을 위한 도구로 선별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⁷⁰⁾

69) Andreas Chatzidakis, Jamie Hakim, Jo Littler, Catherine Rottenberg, and Lynne Segal, *The Care Manifesto*. (돌봄 선언문: 상호의존성의 정치학), 2020

가족은 국가와 사회가 시설에서의 삶을 정당화시킬 때에도 호명된다. ‘가족을 만들 수 없는, 만들어서도 안되는’ 혹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존재들은 시설로 보내질 인구집단으로 쉽게 분류된다. 시설화 정책의 대상은 이상적인 가정환경으로부터 일탈 된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정상성’에서 벗어난 이들은 가족질서 근간을 흔드는 존재로서 시설로 한 데 모여져 보호라는 이름 아래 시민적 자리를 박탈당한다. 가족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자리는 가족과 시설을 대척점으로 만들며, ‘정상가족’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은 시설로 가야한다는 잘못된 명령을 통해 시설을 정당화한다.

시설과 가족의 이분법

2월 어느 날, 신아재활원에 거주하던 한 분이 송과구청을 향해 편지를 한 통 보낸다. "찾지 마세요, 약 챙겨 오지 마세요, 통장, 도장, 내꺼 전화 주세요, 지금 잘 살아요." 그는 이 편지를 보낸 후, 슬리퍼만을 신고선 단신으로 신아원을 탈출하였다. 삶을 내가 꾸리고 싶다는, 내 것을 돌려달라는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신아원에서는 ‘거주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 속에는 거주인들의 욕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통제해온 시설의 권력적 태도⁷¹⁾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이하 숨센터)을 통해 전해진 “신아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찾지 말라는 그의 말과 그가 직접 적은 편지는 무시한 채 마치 그분의 의사를 직접 판단할 주체가 자신들 뿐이라는 듯 신아원은 직접 대면만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와 태도는 신아원이 그동안 ‘거주인의 의사’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짐작케 한다. 보호와 관리라는 이름아래 개인의 권리와 욕구를 대행하는 시설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 단면이었다.

신아재활원은 숨센터와 지난 5년 동안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대규모 거주시설이다. 거주시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주거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되는데, 그 대상은 보통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주거는 먹고 입고 씻고 배설하고 자고 쉬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등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행위를 하는 생존 공간이다. 시설은 주거를 개인의 공간으로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특수한 실체를 만들고⁷²⁾ 대상 집단을 사회 밖으로 분리한다. 시설의 분리는 공간만을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설을 통해 사회 밖으로 분리된 집단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며,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생긴다. 이러한 낙인화는 시설의 부수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곧 시설을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⁷³⁾ 편견과 낙인은 자선을 끌어내기 위한 유용한 힘이자, 시설을 떠나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로 작동한다. 시설을 통한 분리가 지속되는 한 사회는 변화가 필요 없다. 주류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가 공고해지며, 시설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시설은 감시와 통제가 자연스러운 공간이며 자신이 몸과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공간이다. 시설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온갖 개인정보를 밝혀야 하고, 누구도 보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개인 공간을 갖지 못하며 단체생활이라는 이유로 요구되는 규칙과 강제적 활동 등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삶은 비단 시설에서만 있지 않다. 교육에서

70) 김순남, 가족정책의 새방향을 제안한다: 정상 인구, 건강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향해, 2021, ‘가족다양성’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며 발제문

71) 이진희,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투쟁 : 시설사회를 부수는 연대의 회로망, 2021, 2021평창장애포럼

72) 김지혜,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 2020, 시설사회

73) 김지혜,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 2020, 시설사회

배제 당하고, 사회에 진출 할 수 없으며,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소수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도움과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맺는다. 이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과 돌봄을 주는 위치와 받는 위치라는 위계 속에서 친밀함을 매개로 보호라는 이름아래 통제와 폭력이 행해진다.

비밀이 축적된 핸드폰을 빼앗기고, 자녀양육의 결정을 가족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비상식적 통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삶, ‘보호’를 위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허락과 통제 속에서 보낸다. 반복적인 통제의 시간 속에서 저항보다 포기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더 유효함을 학습하고, 순응하라는 요구 앞에 보호와 통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삶의 주도권과 능동성은 희미해진다.⁷⁴⁾

돌봄과 통제를 구별하기

장애여성공감에서는 가족 내에서 일어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 지원했던 한 사건에서 당시 해당 사건을 맡은 한 경찰은 가족 내 인권침해에 대해 ‘이러면 어떤 가족이 돌보겠느냐’고 하였다. 통제와 폭력이 일상적인 곳일지라도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여기뿐이라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에 각자의 시민으로서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가족 아니면 시설이라는 빈약한 선택지만이 주어질 때, 돌봄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통제와 폭력을 피하기 어렵다. 가족 혹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관계에 가려져 폭력으로 명명되기 어렵다. 교육, 보호, 돌봄, 지원, 관리 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들은 비단 장애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취약한 위치 혹은 정체성을 피해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교차적인 차별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폭력의 행위, 유형과 강도, 피해 사실의 증명 속에서 장애여성은 ‘완벽한 피해자’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 사이를 오가다 결국 시설에 갇히거나 가족의 통제 속에 놓이게 된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사건의 강도와 피해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취약성에 의해 어떤 유형의 피해를 어느 강도로 입었는지 입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는 여러 갈래로 교차하는 정체성을 쪼개고 분류하게 된다. 피해자가 놓인 위치를 원인 삼지 않고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처한 복잡한 구조와 드러나지 않는 차별들을 가시화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평등법을 통해 이러한 지원체계의 공백을 극복한다. 평등법은 지원체계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에 평등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계획, 시행, 커미셔닝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의 지원체계 안에 장애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기관들은 종사자 전원이 장애가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퀄 전문가 혹은 활동가의 위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독립 조연자 및 가정폭력 관련 전문가들은 장애인 피해자에게 폭력경험에 대해 묻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지원체계의 공백을 구체적인 방안들로 메워낼 수 있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를 명시한 평등법이 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74) 유진아, 장애여성 다른 삶의 전략 말하기 - 친밀성, 통제의 관점에서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구성, 2019, 장애여성 피해 경험 재해석 : 친밀성과 통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해 권리와 지원을 차단함으로써 ‘무능화/무력화’된 존재로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을 시설화라고 할 때, 가족 내의 통제와 폭력은 분명 시설화와 맞닿아 있다. 시설화는 사회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몇 년 간 탈시설 운동, 의존과 돌봄에 대해 고민하며 시설화의 문제가 비단 장애인 거주시설만의 문제가 아님을 포착하여 다양한 운동진영과 교차적으로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를 진행할수록 우리 사회는 사회의 바깥을 시설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설사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많은 시설이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장애인, 가정환경의 문제를 가진 미혼모, 가정이 부재한 요보호여성, 길 거리를 배회하는 고아를 선별해왔다.⁷⁵⁾ 시설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다양한 존재들과 연결된다. 시설화된 사회는 시설화된 삶을 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자연스럽다. ‘이상적인 인간의 상’을 그려내고, 사회에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 그들을 시설에 고립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왔다. 시설화는 시설 내부에서 작동하는 규율 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가 상상하는 이상적 인간됨의 조건을 구성하는 과정이다.⁷⁶⁾ 돌봄의 공백을 시설과 가족에 전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와, 누군가의 시설화된 삶을 도구로 이득을 취하는 사회의 감금 회로망이 시설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은 돌봄의 공백을 떠맡은 위탁치이자 시설로 보내질 사람을 분류하는 근거로서 위치하며 시설화를 유지하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가족단위로 삶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가족단위로 생존이 가능한 가족제도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수용을 위해 시설을 정당화한다. 가족이 이러한 위치에 자리잡게 된 데에는 ‘정상가족’과 ‘취약가족’으로 이분화하여 구분해 온 오랜 가족정책 패러다임이 배경에 있다.

정상가족의 신화가 유지시키는 시설화

건강한 가족과 특별히 문제 있는 가족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가족을 위태롭고 불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구조만 있을 뿐이다. 이는 신아원 투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신아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탈시설을 요구하는 투쟁 과정에서 거주인 가족들의 반대를 마주하게 된다. “‘안전한 시설’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괜한 문제를 일으키냐, 시설에서 나온다면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로 탈시설을 반대한다. 비단 신아원뿐만 아니라 루디아의집 탈시설 과정에서도 마주했던 장면이다. 이러한 가족들의 말 속에는 ‘정상가족’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러난다. 혈연과 혼인을 중심으로 규정된 협소한 가족의 개념과 정상가족에 대한 신화는 정상가족 밖을 시설화하며, 정상가족 탈락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소수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가족 아니면 시설뿐이다. 가족이 감당할 수 없다면 곧 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며, 이 논리는 시설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

정상가족 패러다임과 시설의 공모는 시설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설장이 거주인들의 보호자/가족을 자처하고, ‘좋은 시설’을 이야기할 때 늘 가족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공간적으로 가족 안이 아니라 시설에 있더라도 화목하고 건강한 정상가족 안에 위치한 듯 보이곤 한다.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혹은 가족 같은 시설뿐이라는 인식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개인으로, 혹은 시민으로서 오롯이 존재하지 못하

75) 김순남,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2020, 시설사회

76) 김순남,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 운동, 2020, 시설사회

는 존재, 가족 혹은 시설이라는 공간 안에서 의존적으로만 그려지는 존재들에게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은 너무나 멀다. 이러한 구조를 눈감은 채 당사자의 탈시설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신아원의 태도는 너무나 기만적이다. 당사자의 결정권과 결정하는 능력을 언급하며 그 위에 책임을 얹으려는 방식은 결국 사회에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2019년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구 지역에서 탈시설 증언대회가 열렸다. “나와서 살아보니까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내가 더 활발해진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탈시설 당사자의 증언⁷⁷⁾ 속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 우리는 이미 가족과 사회에서 자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가족 아니면 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알고 있다. 시민권으로서 차별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물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⁷⁸⁾

시설화된 삶의 이면에는 ‘정상가족’과 ‘취약가족’의 이분법적인 가족제도, 사회 전반에 공고한 정상성이 있다. 가족형태나 가족상황으로 인한 차별은 삶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사회권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공고히 한다. 시설화된 삶은 탈시설 정책만으로 해소될 수 없으며,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 또한 가족정책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 시설화된 삶을 정체성이나 취약성만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넘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 해야한다.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정책과 성별, 나이, 인종, 장애여부, 질병,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이 개인 및 가족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인 개인들의 시민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이들의 자유로운 가족 구성과 가족실천이 가능해진다는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⁷⁹⁾

가족구성의 권리는 반차별 가치를 실현하는 동료시민 되기

사람들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때론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며 다양한 관계속에서 살아간다.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삶을 인구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기능주의적인 가족제도를 넘어서 차이를 가진 개인으로서 살아갈 권리로서 가족구성권이 논의 되어야 한다. 내가 의존할 사람과 나에게 의지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의존의 공백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전가된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 시민으로서 잡리잡은 개인이 시민적 연대성을 통해 서로 관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돌보며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폐쇄적 가족주의를 넘어서 이러한 시민적 연대성 위에 맺은 관계가 사회의 보편화 되기 위해서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화된 관계를 넘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자유롭게 관계 맺고, 치열한 논의와 실패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함께 하는 것이 비단 II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다.

77) 조민정, 나 같은 사람도 나와 살 수 있다!, 2019, 2019 사회복지의 날 맞이 제 1회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 증언대회 : 나는 누군가의 자립생활이다!

78) 김순남, 복합차별, 차별받는 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2021, 2021 차별금지법연속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3차 발제문.

79) 김순남·김원정·나영정·성정숙·유화정,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체성 및 활성화 방안, 2018

정상인 자와 아닌 자, 정상가족에 속한 자와 아닌 자 이러한 정상성의 경계와 시민간 서열화를 허물어 시민적 연대와 관계성을 복원하여 연대의 회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시설화된 삶이 아니라 사회에 각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 대 시민으로 맺는 평등한 관계가 가족구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제도 밖에서 사회는 이미 ‘이성애-결혼-출산-돌봄-죽음’을 기반으로 기획되어 온 생애정상성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족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족질서 유지라는 미명아래 침해되어온 개인의 권리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배제된 다양한 소수자의 삶을 살피고, 사회적인 연대와 시민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법’을 넘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온 위계를 해소하면서 시민과 시민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생성함으로써 자유로운 가족구성과 가족실천이 개인들의 시민적 권리 보장으로서 가능해진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는 것이며⁸⁰⁾, 추상적인 인권 선언을 넘어 사회에 권리가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 과정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시설, 탈가정, 탈가족화, 탈빈곤 등의 의제들은 교차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며, 차별적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며 새로운 연결성과 다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호공존의 토대가 새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80) 김순남, 복합차별, 차별받는 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2021, 2021 차별금지법연속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3차 발제문.